

청렴교육강사 운영, 지원제도 안내

2016.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청렴교육 실시 의무화, 청렴교육강사로 지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청탁금지법」 등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제도는 강사의 양성과 강사 인력풀의 공개로 구성되며, 제도의 운영은 내부 규정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를 청렴교육강사로 보유하거나 우수한 전문가 집단에서 청렴교육강사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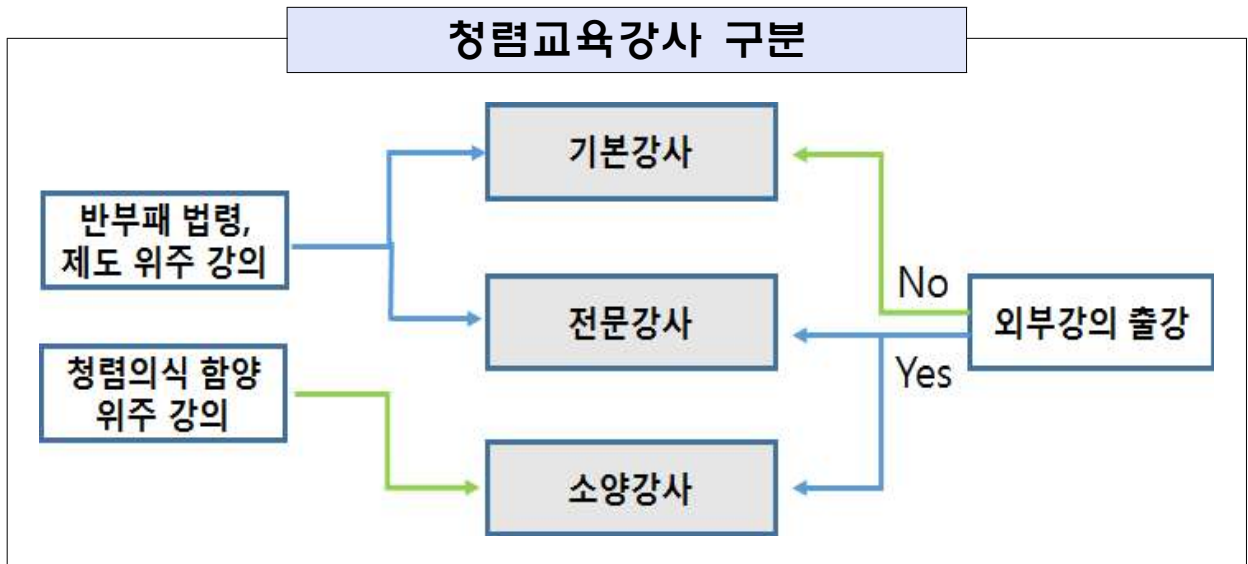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이번 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청렴교육강사의 운영방향

청렴교육강사는 “교육내용”, “외부강의 출강 여부”에 따라 다음의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강사) 소속된 기관 및 단체 내에서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소양강사)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전문강사) 반부패 법령 및 제도·소양 등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청렴교육강사의 인력풀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www.acrc.go.kr/edu)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부3.0 정보공개 강의실 → 청렴교육강사정보(전문·소양)

공직자 및 민간전문가 등 비공직자는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의 절차를 통해 청렴교육강사 인력풀로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청렴연수원 훈령 제4호, 2016. 10. 25. 발령)

< 기본강사 >

기본강사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 내에서만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며,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 (자격요건)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수료한 자
- (등록기간) 소속 공직기관 퇴직 후 2년이 되는 날(공직자), 기본강사 등록 후 2년이 되는 날(비공직자)

< 소양강사 >

소양강사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며,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공개대상입니다.

* 예시 : 공직경험·역사적 사실·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한 청렴강의 등

- (자격요건) 다음 요건에서 1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소양강사 인력풀 등록이 확정된 자

소양강사 자격요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분야에 대한 탁월한 업적과 전문성이 인정된 자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청렴교육을 담당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등록기간) **2년**(심의회에서 강의활동 실적 등을 고려, 연장 가능)

< 전문강사 >

전문강사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강사이며,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공개대상입니다.

* 예시 : 청탁금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시책평가·청렴도평가 등

- (자격요건) 다음 요건에서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전문강사 자격요건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 평가'를 통과한 공직자 및 민간인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수료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수료한 소양강사
- 기본강사 중 '소양강사'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서 심의를 통과한 자
- 심의를 통해 청렴교육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등록기간) 2년(심의회에서 강의활동 실적 등을 고려, 연장 가능)

☞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의 상세내용은 [붙임 2]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3 청렴교육강사 섭외 안내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강사”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강사를 섭외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한 기본강사 명단을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에 통보하여 원활한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본강사 섭외가 어렵거나 기본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공공기관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청렴교육강사 인력풀(소양·전문)에서 강사를 선택 및 섭외합니다.

-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찾는 법(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정부3.0 정보공개자료실”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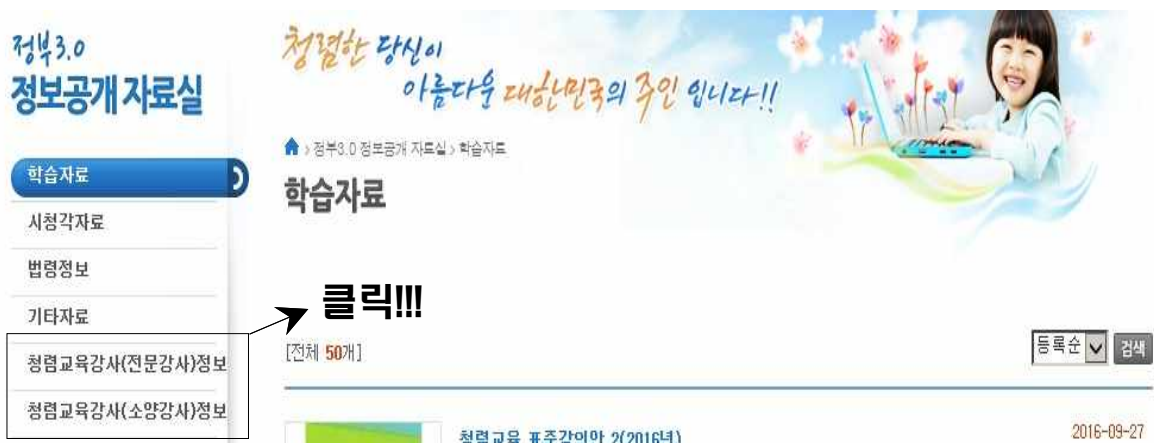
팝업존 < > 1 2 3



청렴한 당신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나. 정부3.0 정보공개자료실 메뉴 중 “청렴교육강사(전문강사, 소양강사) 정보” 클릭



다. 해당 페이지에서 청렴교육강사 목록 확인 가능, 청렴교육강사의 사진을 클릭하면 한글파일로 된 세부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가능



4

청렴교육강사 관련 담당자 연락처

- 청렴교육강사 제도 운영 : 정대우 주무관(043-901-6124)
-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
 - 기본과정 : 이 준 주무관(043-901-6125)
 - 전문과정, 시연평가 : 안채리 주무관(043-901-6123)

붙임 1.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제도 주요 Q&A

붙임 2.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안내

붙임 3. 청렴교육강사가 되기 위한 절차 안내

붙임 4.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청렴연수원 훈령 제4호, 2016.10.25.)

Q :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외부에 청렴강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A :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렴교육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렴교육강사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부에 청렴강의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 :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강사를 추천하거나 중개해 줄 수 있습니까?

A : 청렴연수원은 우수한 청렴교육강사의 인력풀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천이나 중개는 일부 강사에 대한 특혜로 오인될 수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향후 전문강사의 경우 강의실적 및 만족도를 공개하여 공공기관에서 우수한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Q : 청렴교육강사에 대한 적정한 강사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A : 청렴교육강사 중 현직공직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공직자의 경우 강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청렴연수원은 현재 등록된 청렴교육강사에게 별도의 수당이나 강의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실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소양강사, 전문강사 등 어떤 강사를 섭외해야 합니까?

A : 「청탁금지법」 제19조의 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 교육은 해당 내용을 강의를 주로 하는 “전문강사”를 섭외하시면 되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 2의 부패방지교육은 소양강사, 전문강사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청렴교육강사 양성을 위해 3단계의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

청렴교육강사가 되기 위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기본지식을 학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공직자 및 민간전문가 등 비공직자(구분 모집)
- (교육인원/교육기간) 매 회당 100명/2박 3일
-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시험평가(객관식)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

청렴교육강사가 되기 위한 강의시연·강의자료 준비 등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
- (교육인원/교육기간) 매 회당 30명/2박 3일
- (교육내용) 교수기법, 프리젠테이션 전략, 마이크로티칭 등

< 강의시연 평가 >

청렴교육강사가 되기 위한 강의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 (평가대상)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자
- (평가인원/평가기간) 1일 10명 내외/1명 당 30분 평가
- (평가방법) 3명의 위원(내·외부)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일정은 '17년도 청렴집합교육 운영계획에서 통보(2월)

청렴교육강사에 관심이 있는 현직공직자 및 민간전문가 분들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양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현직공직자, 비공직자)

- ▶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구비 후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렴연수원 담당자에게 제출

* 청렴교육강사 신청서, 프로필,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2) 전문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현직공직자

-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수료 → 강의시연 평가 합격
-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각급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 ▶ 심의를 통한 전문강사 신청(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전문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비공직자

-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수료 → 강의시연 평가 합격
-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 중 **소양강사 등록의 요건이 충족된 자**(소양강사는 심의를 통해 등록 가능)
- ▶ 심의를 통한 전문강사 신청(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정대우 주무관, 043-901-6124)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정 2016. 10. 25. 청렴연수원 훈령 제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교육 실시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수행할 청렴교육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청렴교육 기본강사”, “청렴교육 소양강사”,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2. “청렴교육 기본강사”(이하 “기본강사”라 한다)란 본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렴교육 소양강사”(이하 “소양강사”라 한다)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청렴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소양 등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이란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 강사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관련 전반을 교육할 수 있도록 16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기본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90%이상 교육시간에 참석해야 하고, 시험평가에서 8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한다.
6.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이란 청렴연수원에서 제5호의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수기법·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전문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90%이상 교육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7. “강의시연 평가”란 청렴연수원에서 제6호의 전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의 강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에서 합격여부는 별도 기준에 의거 선정되는 내부평가위원 1명, 외부평가위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보수교육 과정”이란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등을 보완 교육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청렴교육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청렴연수원에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등 전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은 청렴연수원장, 내부위원은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청렴교육 및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과 직원 중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같은 기관, 혹은 감사·조사·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6회(2개월에 1회 개최)
2. 임시회의 :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⑤ 청렴연수원장은 제9조 제1호 부터 제4호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심의회의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의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심의안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양강사의 인력풀 등록 및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전문강사의 인력풀 등록에 관한 사항
2. 소양강사 및 전문강사의 인력풀 등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소양강사 및 전문강사의 인력풀 제외에 관한 사항
4. 일반민간인 등 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기본·전문 등) 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일반민간인 등 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기본·전문 등) 교육비 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의회 운영 및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자문료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의 위원·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심의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청렴교육강사 신청

제12조(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 공지) 청렴연수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 계획 및 일정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교육과정 및 강사신청) ① 기본강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렴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신청서”
2.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활동 서약서”

② 소양강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전문강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렴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프로필”
3.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4.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활동 서약서”

③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전문강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렴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수료 이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프로필”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신청서”
2.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활동 서약서”

④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전문강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렴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양강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전문강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프로필”을 작성하여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렴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강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렴연수원에서는 신청서류 접수결과를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청렴연수원은 제6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4장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등록

제14조(기본강사 등록) ① 청렴연수원장은 기본과정을 수료한 자를 기본강사로 등록한다.

② 청렴연수원장은 기본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본강사 등록 여부를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소양강사 등록) ① 청렴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양강사 인력풀에 등록한다.

1.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탁월한 업적과 전문성이 인정된 자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청렴교육을 담당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청렴연수원장은 심의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소양강사의 정보를 즉시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6조(전문강사 등록) ① 청렴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전문강사 인력풀에 등록한다. 단,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강사 인력풀에 등록한다.

1.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 평가에 합격한 자
2. 기본과정을 수료한 각급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3. 기본과정을 수료한 소양강사
4. 기본과정 수료자 중 제15조의 소양강사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청렴교육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연수원장은 강의시연 평가 후 10일 이내에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여부를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연수원장은 기본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여부를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연수원장은 심의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7조(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운영) ①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본강사의 경우 소

속 기관에서 퇴직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본강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기본강사는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본강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본강사가 타 공공기관에 임용된 후 1년 이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청렴강의를 실시한 경우, 해당내용을 신고 시 해당기관의 기본강사로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청렴강의를 실시한 일자가 직전 공공기관 퇴직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기본강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소양강사 및 전문강사의 인력풀 등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하며, 심의회에서 강의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인력풀 등재기간 만료 후 연장여부에 대한 심의회 심의·의결이 있기까지는 인력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청렴교육강사 의무) ① 기본강사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연 1회 이상 강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양강사 및 전문강사는 인력풀 등록 이후 강의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강의실적 보고서”에 의거하여 등재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청렴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강사는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인력풀 등재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제5장 청렴교육강사의 인력풀 제외

제19조(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제외) ① 청렴교육강사 본인이 인력풀에서 제외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를 청렴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정보를 삭제한다.

② 청렴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인력풀에서 당연 제외된다.

1.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등재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

③ 청렴연수원장은 청렴교육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여 인력풀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1. 청렴교육강사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
2.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외부기관 강의를 목적으로 청렴교육강사로 홍보한 기본강사
3. 소양강사 및 전문강사 인력풀 등재기간 중 연평균 2회 이상의 강의활동을 하지 않은 자
4.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인력풀 등재기간 중 1회 이상 수료하지 않은 전문강사
5. 기타 풍기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 청렴교육강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제20조(인력풀 제외 유예) 청렴교육강사가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이 불가능하여 청렴연수원장에게 사전 통지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청렴강사 인력풀 제외에 대한 유예를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심의회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렴교육강사 및 교육대상자 등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심의회의 결정은 유보되지 아니한다.

제6장 청렴교육강사 지원 등

제22조(담당부서 지정) 청렴교육강사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렴연수원 내 청렴교육 운영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3조(강사지원) 청렴교육강사는 교재·영상자료 등 청렴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청렴연수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청렴연수원은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홈페이지 게시) 청렴연수원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소양강사 및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이 규정의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에 대한 「청렴연수원 운영규정」(청렴연수원 훈령 제3호, 2015.09.16.개정) 제7조 제3항(교육운영심의회 구성·운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청렴교육전문강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청렴교육전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청렴교육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는 각각 이 규정에 의한 소양강사, 혹은 전문강사로 본다.

No.

위 축 장

○ ○ ○

귀하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 ~ 0000. 0. 00.)

0000. 0. 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청렴교육강사 신청서

반명함 사진 부착	성명		생년 월일	
	소속 기관		직급 및 직위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강사	<input type="checkbox"/> 전문강사 <input type="checkbox"/> 소양강사 ※ 신청하고자 하는 강사의 네모칸에 체크표시			
강의주제(분야)	○ ○ ○ ※ 강의주제 및 분야는 가급적 3개 이내로 정리하여 제출			

상기 본인은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강사를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1. 청렴교육 강사 프로필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청렴교육 강사활동 서약서 1부.
4. 경력·활동 등 기타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이름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 귀하

청렴교육강사 프로필

< 강사등록 현황 >

강사종류	소양강사	등록번호	2016-01-00	등록일자	2016.00.00.
------	------	------	------------	------	-------------

※ 상단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작성

< 기본정보 >

반명함 사진 부착	성명		생년 월일	
	소속 기관		직급 및 직위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상세정보 >

강의주제, 분야	○ ○ ※ 강의주제 및 분야는 가급적 3개 이내로 정리하여 제출
출강가능지역	※ 전국 출강이 가능할 경우, '전국' 하나만 표시
주요 학력 및 경력	○ ○
저서, 연구자료	
강의실적 (최근 2년)	○ ○
청렴강사로서 장점	※ 본인만의 강의 노하우 및 팁, 강의 사례, 강의 논리전개방식 등 자유 기술

청렴교육강사 활동 서약서

본인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등록 후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강의활동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나는 청렴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등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1. 나는 청렴교육강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1.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부패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을 충실히 학습하여 교육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위의 사항 이외에 청렴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 귀하

청렴교육강사 강의실적 보고서

◆ 인적사항

강사종류	<input type="checkbox"/> 전문강사 <input type="checkbox"/> 소양강사	강사등록일자	
성명		생년월일	

◆ 청렴교육 강의실적

활동기간(강사등록일부터 2년까지 기간)		201X. 00. 00. ~ 201X. 00. 00.	
일시	장소	기관명	주요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2016. 00. 00. 00:00~00:00	0000 대강당	000공사	이사장 외 주요간부 50명
총 교육횟수	특이사항		
회	○ ○		

※ 강의실적은 증빙이 가능한 기관 위주로 최대 4회 이내 기재, 특이사항은 교육 만족도·교육생 소감 등을 필요한 경우 간단히 기재

본인은 청렴교육강사 등록 이후 상기와 같이 청렴교육을 강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 귀하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인적사항

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강사 <input type="checkbox"/> 소양강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사등록일자	
성명		생년월일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 이의신청 사유는 글자 12pt, 줄간격 160%, 신청서 포함 1페이지 이내,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본인은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제외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 ○○○호

의 안 명 ○○○○○○○○

의결연월일 ○○○○. ○○. ○○.

이에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붙임 : ○○○○○○